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61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 의 자 : 김재원 · 신장식 · 정춘생
서왕진 · 강경숙 · 백선희
최혁진 · 정혜경 · 황운하
한창민 · 서영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관련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 문화 향유 프로그램의 운영·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시설별 또는 지역별로 이행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전담인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장애인의 실질적인 이용 편의와 문화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장애인을 동행 지원하는 전담인력의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접근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전단 중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용과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과 동행하며 장애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하 “장애인동행안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장애인동행안내원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장애인동행안내원의 업무, 자격, 배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u>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u>	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① -- ----- ----- ----- ----- ----- ----- <u>제공하여야 한다.</u> <u><후단 삭제></u>
② (생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용과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과 동행하며 장애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하 “장애인동행안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u>
<u><신 설></u>	④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u>

<u><신 설></u>	<u>항에 따른 장애인동행안내원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u> <u>⑤ 그 밖에 장애인동행안내원의 업무, 자격, 배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